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박 영 모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의도용 관련 자동차세 납세의무



질의내용

명의도용에 의한 자동차등록의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라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지방세 해석 운용 매뉴얼 196의3-1), 추후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자동차 소유권 등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원인무효라는 판결로 자동차 소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 부과된 자동차세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



방세운영과-2650, 2009. 7. 2.]

2. 신용정보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등록 된 후 동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신용정보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 규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서 “법인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고(휴면법인), 영업계속을 신고하도록 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2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의제하고, 해산이 의제된 후 3년 내에 회사계속결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 신용정보등록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폐업·청산이 신용정보등록 해제사유에 포함되어 이를 해제할 지 여부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2681, 2009. 7. 3.】



3.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내용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설계 엔지니어링업을 주된 유치업종으로 아파트형공장 신설 승인('07.4.2.)을 받아 '08.7.10. 아파트형공장을 설립 한 후 제조업이 아닌 조선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35개업체)에게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제조업이 아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2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비록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지식산업)이 아파트형공장



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2282, 2009. 7. 13.】

4.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내용

'07.9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조건부로 분양되어 '09.2.12. 현재 미분양상태이던 주택이, '09.6월 관련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경우, 당해 주택을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실관계

- '04. 8. : 주택건설사업승인
- '07. 1.11. : 정부시범사업 시행 발표
- '07. 4.20. :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공급근거 마련(주택법 제38조의 5)
- '07. 7. 9. : 국토부 시범사업지구 확정
- '07. 9.29. : 조건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시행결과, 92.4% 미분양
- '09. 6. 5. : 조건부 주택에 대한 국토부 방침결정
 - 기존 조건부주택 →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공급
- '09. 6.10. : 국토부 위 주택에 대한 처리방안 시달



- '09. 6.19. :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재분양 시행결과, 64% 미분양



회신내용

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7조 제4항에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액의 100분의 75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38조의5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경우 일반분양주택과는 분양대상, 매도조건 등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새로운 분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비록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로 분양시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9. 6. 19. 새로운 일반분양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2902, 2009. 7. 20.】



5.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비과세 여부



질의내용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촉탁등기 하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 관리인의 선임, 정리절차 등과 같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리절차 개시 후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예 : 임원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변경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촉탁등기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규정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7. 1. 9. : 회생절차개시 결정
- 2007. 10. 16 : 회생계획 인가
- 2007. 11. 17. : 법원에서 등기 촉탁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 4,388,843,515,000원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 378,000,000,000원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06조, 제266조에 의하여 출자전환 되는 부분과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유상증가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등기
- 2008. 3. 25. : 회생절차 종결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 납입 등이 있는 신주사채발행,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등기소에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하고,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회생절차개시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감면규정을 두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비과세 대상(예 :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출자전환, 유상증자, 합병에 따른 자본증가, 임원변경 등기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2900, 2009. 7. 20.】

6.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 여부



질의내용

가. 질의1) 한국철도공사의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시, 국가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분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국가소유 철도시설(선로, 신호, 관제시설 등)의 유지보수는 국가(철도시설공단 포함)가,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로 각각 구분



- 그러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관리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의해 철도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음
- 나. 질의2)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이 철도공사의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다. 질의3)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스포츠단의 합숙소 및 훈련장이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축구단의 합숙소는 경기 00에 소재하고 훈련장소는 일정치 않음
 - 유도단의 합숙소 및 훈련장은 동일건물내 함께있음(서울 △△ 소재)
- 라. 질의4) 축구단과 유도단 각 선수들의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는
 - 사실관계
 - 철도공사의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운동선수(프로운동선수가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들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본사조직의 일부인 홍보실(서울 ○○구 소재)에서 스포츠단에 대한 운영 및 사무처리가 이루어짐



회신내용

- 가.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주민세(법인세할)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법인의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시·군의 종업원수와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와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시행 업무에 대한 운영 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일체의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은 지방세법 제172조제7호의 사업장으로써, 동법 제1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별도 법인인 노동조합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축구단 합숙소가 다세대주택내의 운동선수들의 순수한 주거전용 시설이라면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 유도단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유도단의 훈련장에서 운동선수들의 상시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부대시설인 합숙소 또한 훈련장과 함께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각종 회의, 교육훈련,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도단의 훈련장 및 합숙소는 지방세법 제172조제7호의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법인 목적사업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라. 질의4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도선수의 경우 일정한 훈련장이 있고, 당해 장소에서 주로 근로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장소를 근무지로 볼 수 있겠으며,



○ 근무지가 일정치 않은 축구선수들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곳을 근무지로 볼 수 있겠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귀속 납세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934, 2009. 7. 23.】

7. 법인합병 관련 감면분 추징 여부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갑)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취득·등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및 제116조 제9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당해 사업용재산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



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규정의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됨).

나. 한편, 법인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재산의 소유권의 이전과 이에 따른 등기가 수반되는 점,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익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대상 물건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등을 고려해 볼 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용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추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사업용재산을 처분한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및 제116조 제9항에서 '합병'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병'으로 인한 사업용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갑)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여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추정유예기간 이내(2년)에 B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감면받은 사업용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및 제120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받은 취득·등록세 추정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3013, 2009. 7. 28.】



8.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의미



질의내용

재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이라 함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 또는 후의 세액 중 어느 세액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제142조(세부담상한)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이 금지되는 바 (대법원 02두9537, ' 03.1.24)

다. 귀문의 경우 재산의 승계취득 등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당해연도 직전의 1년으로 한정하여 그 당시의 세율, 과표적용률, 공시가격 등을 반영한 법정 산출세액(세부담 상한 적용 전)이 타당합니다. **【지방세 운영과-3025, 2009. 7. 29.】**



9.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련 첨부서류



질의내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시 첨부 서류



회신내용

-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에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31호)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행정안전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운영과-3070, 2009. 7. 31.】

